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4. 23 선고 2014가합1108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3. 19.

판결 선고 2015. 4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. 7. 13. 접수 제180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.

나. 원고는 1995. 7. 8. 아들들인 피고(장남) 및 C, D,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/4 지분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작성하고,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~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9, 10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각 토지 중 1/4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,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그러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.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4명의 아들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/4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64세 남짓한 나이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,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, 원고가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필요성(강제집행 면탈, 조세회피 등)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(원고가 직접 작성한 '피고 B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론'에 의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들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동기에 관하여 "어차피 본인의 사후에는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지만, 가족의 화합과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, 재산을 분리

관리하는 일환책으로 편의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."라고 하고 있어서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).

②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4형제는 2004. 7. 4.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가족회의를 열었는데,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반대하자 만약 피고가 계속 매각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지분을 분할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피고가 이를 반대하는 것을 나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.

③ 원고의 아들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"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. 만약 매각이 성사되었다면, 매각대금은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아들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눠가졌을 것이다."라고 증언하였다.

④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의 아버지라는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

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재판장판사김인택

판사이종민

판사박하영

별지